

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1998. 2. .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제안이유

시민의 체력증진 도모 및 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,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상이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

주요골자

- 가. 기금은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일반회계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출연하고, 목표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이 미달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.
- 나. 기금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함(안 제3조).
- 다. 시의 출연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,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은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·개발 및 그 보급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(안 제4조).
- 라.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시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, 기금운용관은 체육담당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체육담당계장으로 함(안 제5조).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(안)

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·관리조례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, 진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천시 체육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이천시 일반회계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. 다만, 목표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이 미달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.

제3조 (기금의 관리) ①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기금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
제4조 (기금의 운용 등) ①시의 출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.

②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·개발 및 그 보급사업
2. 시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
3.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
4.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

③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대외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 (기금관리 공무원 등) ①기금관리를 위하여 시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②기금운용관은 체육담당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체육담당계장으로 한다.

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출연금 및 이익금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
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된 것으로 본다.